

2020년 5월 2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정책과 과 장 최명철(044-201-2511), 박경일 사무관(2519) / 제공일 : 5월 27일 (총 31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농가지원 및 방역 강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 주 요 내 용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내용 >

- ① 중점방역관리지구 양돈 농가에서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폐업 지원금 지급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폐업지원금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함
- ②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보상금 협의 절차 마련
- ③ 시장·군수·구청장의 도태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살처분 명령 이행 농가와 동일하게 생계안정자금 지원 근거 마련
- ④ 농가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한 과태료기준 신설·강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내용 >

- ① 역학조사관의 지정 범위, 교육·훈련 기준과 절차 마련
- ②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기준 마련
- ③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와 도태 기준과 절차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I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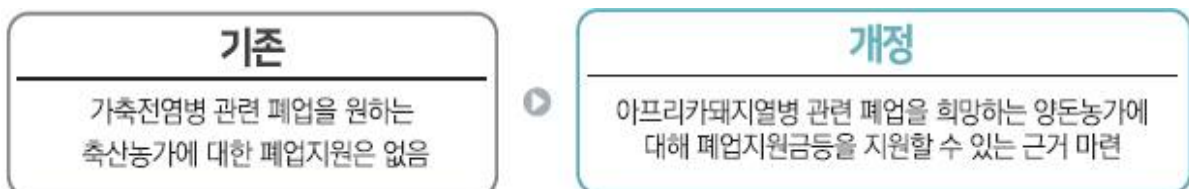
① 폐업지원액, 지원사유, 지급기준 등 폐업지원 관련 사항을 정함

1> (폐업지원금 지급 사유)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 농가가 아래의 사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음(제11조의2제1항)

- ①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 ②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멧돼지)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정부가 농가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 가축의 종류는 “돼지”로 함(제11조의2 제2항)

○ (기대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시 기존 양돈농가에서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지원이 가능하게 개선됨



2>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양돈농가가 「축산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축사”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① 용도를 변경하거나 ② 철거 또는 ③ 폐기한 경우 지급함(제11조의2 제3항)

○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에는 용도 변경을 통하여 잔존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으므로 별도의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가가 선택하여 폐업할 수 있음

3> (폐업지원액)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을 지원하도록 함

* (산출식) 가축의 연간 출하마릿수 × 연간마리당 순수익액 ×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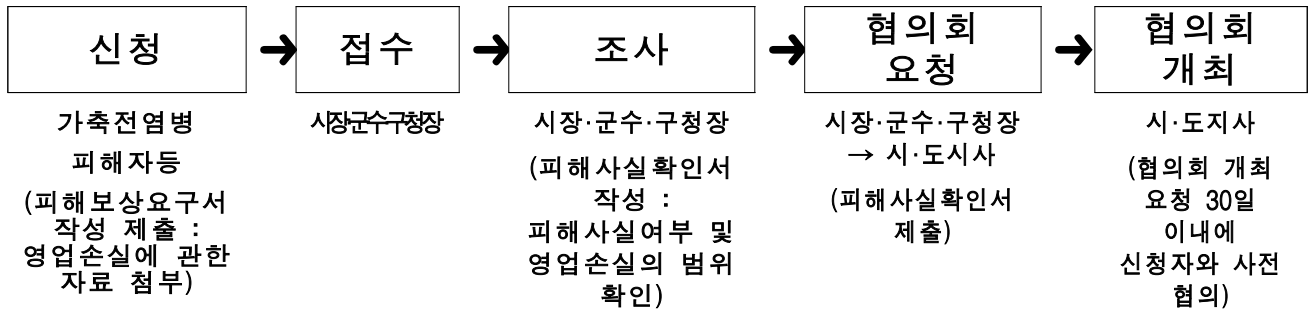
- “폐업지원액”을 ‘순수익액의 2년분’으로 정한 것은 자율적으로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수혜적 차원의 지원으로 유사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

4> (신청 및 지급기간) 농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제11조의4)



5> 폐업지원금 지급제외 기준(제11조의2제4항)

- ①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 ②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②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소유자 또는 시설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시·도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법률(제48조제1항: 보상금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한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제11조의5)



③ 도태명령 이행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함(제12조)

- 시장·군수·구청장의 도태명령에 따라 도태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사육한 자)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④ 매몰지 관련 사업에 정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3조 제1항)

-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 매몰지 관련 사업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을 법률로 명확히 함

⑤ 농가 방역책임 강화를 위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강화함(별표3)

- 기존에는 고장(훼손)난 소독·방역시설이 방치되어도 처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주요 내용	과태료 기준(단위 : 만원)					
		1회 위반		2회		3회	
신설	○(AI·ASF·구제역) 고장(훼손)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방치	500		750		1,000	
	○(AI) 농가 "방역관리 책임자"의 방역교육 미이수	300		600		1,000	
강화		중전	개선	중전	개선	중전	개선
	○(AI) 농가 방역관리 책임자 미지정	200	500	400	750	1,000	1,000
	○(AI)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농가 교육 허위 신고	100	300	200	600	500	1,000
	○(AI)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 위반	100	500	200	750	500	1,000

Ⅱ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① (특정매개체)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를 추가함(제2조제3항)

* 법에서는 “야생조류” 또는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규정하고 있음(‘20.2.4., 법 제2조제7호 신설)

- ② (역학조사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미리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신설함(제16조, 제16조의2)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역학조사관은 20명 이상, 시·도지사 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지정은 각각 2명 이상을 두도록 함

○ 역학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세부기준 마련함

- (신규 교육·훈련) 2년 과정의 현장중심 직무교육훈련과정으로 1회의 기본교육 및 6회의 실무교육 과정

* 기본교육: 120시간 이상, 실무교육: 144시간 이상

- (보수 교육·훈련) 연 2회 실시하되,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 (기대효과) 검역본부와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미리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 및 근절 효과 기대

- ③ (예방적 살처분 기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가축과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인근 사육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제23조 제4항)

①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②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친 경우

④ (도태명령) 가축전염병의 발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긴급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절차 및 도태 방법
등을 마련함(제24조의2, 별표 4)

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확산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인근
지역 가축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검사결과 양성
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중앙 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 또는

②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발생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장소의 인근 지역 가축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중앙
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으로 정함

※ 도태 명령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위탁 사육 포함)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함

☞ (기대효과) 도태명령 농가에 대하여도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도태명령 이행의지 고취 및 농가 지원 강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1] 2020년 2월 4일 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주요 개정내용

- (폐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 중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폐업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2)
- (역학조사관 제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 방역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수의사, 의료인 등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함(제13조)
- (예방적 살처분)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가축과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방적 살처분 명령 가능(제20조)
- (도태 명령)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긴급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태명령(제21조제3항) 및 도태명령 이행 농가 생계안정 자금 지원(제49조제1항)
- (농가 방역점검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 실시 의무 부여(제17조제8항)

[참고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보상금 등) ① ~ ⑥ (생략) <u><신 설></u>	제11조(보상금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u>
<u><신 설></u>	<u>제11조의2(폐업지원금의 지급 등)</u> <u>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u> <u>1.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u> <u>2.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u>

현행	개정안
	<u>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u>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 가축은 돼지로 한다. ③ 폐업지원금은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축사(이하 “축사”라 한다)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

현행	개정안
<신 설>	<u>의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u> <u>2.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u> <u>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u> <u>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11조의3(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 ① 폐업지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의 사육형태 등을 고려할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폐업지원금 금액 = 가축의 연간 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2년</u> <u>② 폐업지원금의 상한액은 축산농가의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11조의4(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①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가축의 사육 현황 및 폐업지원금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u> <u>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의 사육 현황 및 폐업신고 여부 등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u> <u>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에</u>

현행	개정안
<신설>	<u>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u> <u>⑤ 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u> <u>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조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11조의5(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이하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을 대상으로 한다.</u> <u>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u> <u>폐업 등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u> <u>2.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경우:</u>

현행	개정안
	<u>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및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에 대한 검사 등의 실시 당시의 평가액</u> 3. <u>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경우:</u> <u>살처분한 가축의 살처분 당시의 평가액</u> 4. <u>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경우:</u> <u>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한 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의 평가액</u> 5. <u>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경우:</u> <u>이동 제한으로 활용하지 못한 인력 비용</u> 6. <u>법 제48조제1항제6호의 경우:</u> <u>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으로 도축장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u> ② <u>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	③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의 범위를 확인한 후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3항에 따른 피해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 ----- -----

현행	개정안
이라 한다)은 <u>법 제20조제1항</u> <u>본문 및 단서</u>에 따라 우역·우 폐역·구제역·돼지열병·아프 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 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u>살처분</u> <u>한</u>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해당 가축을 <u>살처분한</u> 가축 의 소유자가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u>아</u> <u>니하였거나</u>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u>아니한</u> 가축 의 소유자 ② ~ ④ (생략) 제12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 서 “<u>그 밖에 자원봉사자</u>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자원봉사자 및 가축을 살처분하 거나 <u>소각·매몰한</u> 사람으로서	----- <u>법 제20조제1항</u> <u>본문·단서 또는 법 제21조제2</u> <u>항</u>----- ----- ----- <u>살처분</u> <u>하거나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u> <u>도축장 등에 출하한</u>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살처분한 경우</u> - ----- ----- <u>않</u> <u>았거나</u> ----- ----- <u>않은</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 --- <u>자원봉사자</u> ----- ----- ----- -- <u>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u>

현행	개정안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u><신 설></u>	<u>리를 한</u> ----- ----- -----.
	②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치료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진료기관에 치료 요청을 하고,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4항----- -----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비용의 지원) ①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비용의 지원) ①----- ----- ----- ----- -----.
1.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록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 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및 법	1. ----- ----- ----- ----- ----- ----- -----

현행	개정안
<u>제25조에 따른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u> 2. <u>법 제20조, 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매몰 및 소독(이하 이 호에서 “살처분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가.·나. (생략) <u><신설></u>	<u>제25조제2항</u>----- ----- ----- ----- ----- 2. <u>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법 제22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법 제23조제1항·제3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및 소독</u>----- -----. ----- ----- -----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3. <u>법 제24조에 따른 매몰지의 관리, 법 제24조의2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②·③ (생략)	<u>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u> <u>4.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u> <u>원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u> <u>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u> <u>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u> <u>단체가 지원</u> ②·③ (현행과 같음)

[참고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축에 <u>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u> 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u>야생 조류</u> 2. (생략)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u>아프리카돼지열병</u> 을 ----- ----- ----- <u>물렁진드기</u> 2. (현행과 같음)
제3조의4(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생략) 1. ~ 3. (생략) 4.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u>살처분·소각·매몰</u>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5. ~ 8. (생략)	제3조의4(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u>살처분·소각·매몰·화학적 처리</u> ----- ----- ----- 5. ~ 8. (현행과 같음)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다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조의4제6항-----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중점방역관리지
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⑥ (생 략)

제7조의3(질문·검사·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① (생 략)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
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 등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 3. (생 략)

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출국 신고 등) ① 법 제
5조제6항에 따른 질문·검사·소
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
국·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고 대상
자의 확인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소, 산양, 면양, 돼
지, 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조에 따른 사슴, 오리, 거위, 칠
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질문·검사·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사람 -----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출국 신고 등) ① ----

---- 사람의 -----
-----.

-----.

1. -----

----- 사육하는 사람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동거가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4. 5. (생략)
6. 가축방역사: 법 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7.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에 고용된 자
가. ~ 라. (생략)
8. 사료를 판매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에 고용된 자
가. 나. (생략)
9.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10. (생략)
1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5호의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12. 13. (생략)
- ② 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자가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

2. -----

----- 제공하는 사람
3. -----
----- 사람과 -----

4. 5. (현행과 같음)
6. -----
----- 사람
7. ----- 판매하는 사람-----

사람과 ----- 사람
가. ~ 라. (현행과 같음)
8. ----- 판매하는 사람-----
----- 사
람과----- 사람
가. 나. (현행과 같음)
9. -----
사람
10. (현행과 같음)
11. -----

- 사람
12. 13. (현행과 같음)
- ② -----
----- 사람이 -----

여부를 세관장의 협조를 얻어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소독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7조의10(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제13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성명 및 신고대상 가축의 사육 장소 또는 발견장소

2.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15조(역학조사의 대상 등) ①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사람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10(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조의3제6항-----
-----.

제13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

1. -----
성명(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법인명으로 한다) -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역학조사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검역본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2 이상의 시·도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기술·장비 등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

②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각 호에 따른 -----

----- 각 호의 -----

-----, -----
----- 긴급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

1. -----

가. -----
- 각 호에 따른 -----

나. ---- 각 호에 따른 -----
----- 시·도지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2.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가. ----- 각 호에 따른 -----

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그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관할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④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추가로 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시·도역학조사반을 각각 두되, 중앙역학조사반원은 검역본부장이, 시·도역학조사

나. ----- 각 호에 따른 -----

③----- 각 호에 따른 -----

----- 각 호와 -----.

1. ~ 5. (현행과 같음)

④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 시·도지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 하에 --

반원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④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가축방
역기관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
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
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
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 시·도지사 및 시·도 가
축방역기관장이 각각-----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

-----.

-----.

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역
본부장은 20명 이상의 역학조사
관을,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
방역기관장은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
해 별표 1의8에 따라 교육·훈련
을 실시해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
·도 가축방역기관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② ~ ⑩ (생략)

제23조(살처분명령 등) ① (생략)

②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9호서

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역학조사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

2. 역학조사관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3. 역학조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드는 비용

④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시·광역시 소속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별표 1의9와 ----.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살처분 명령-----

식에 따른다.

③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가축을 사살·전살(電殺: 전기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타격·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 3. (생략)

<신설>

-----.

③-----

----- 살처분 명령-----

-- 해당 -----

----- 살처

분 명령-----

-----.

1. ~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2.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발생 장

④ ~ ⑥ (생 략)

제24조(도태의 권고) ①법 제21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구제역·돼지열병

2. 3. (생 략)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권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권고서를 도태기한 10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낙인·천공·귀표·목걸이·페인트칠 등의 방법으로 도태권고대상 가축임을 표시하는 것

소를 관할하는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24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

-----.

1. 제1종가축전염병: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 3. (현행과 같음)

②-----

----- 도태
권고서----- 발
급해야 -----.

③-----

----- 도태 권고
대상 -----

을 말한다.

<신 설>

④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33조(수입금지 지역 등) ①·② (생 략)

③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려는 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 또는 열차에 탑재하여 출항지까지 운송하거나 항공기·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두어야 한다.

제34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생 략)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명령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도태 명령서를 도태기간 10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33조(수입금지 지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거친 -----
----- 거쳐 -----

-----.

제34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현행과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5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같음)

②-----

화물주-----

-----.

제45조의6(폐업지원금 지급절차)

① 영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5조의7(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

구서 등) 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는 피해 사실확인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50조(규제의 재검토) -----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20조제1항 및 <u>별표 1의8</u>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2017년 1월 1일 6. ~ 32. (생략)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별표 1의9</u>----- ----- ----- 6. ~ 32. (현행과 같음)
---	---